
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상회의등) 「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”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말한다.

1.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
2.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(SOM), 각 부처가 주관하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여타 고위급회의
3. 최고경영자회의(CEO SUMMIT),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(ABAC) 및 각종 부대행사

제3조(정상회의등 관련시설) 법 제2조제2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미디어센터
2. 전시장
3. 종합상황실 및 그 부속시설

4. 연회장

5. 부대행사장

6.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제4조(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5조에 따른 준비위원회(이하 “준비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준비위원회의 회의)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준비기획단의 구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(이하 “준비기획단”이라 한다)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,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.

1. 외교부장관

2. 대통령비서실 상근(常勤) 외교안보특별보좌관

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

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,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. 다만,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위관리회의 의장 : 고위관리회의의 주재,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

2. 기획실장 :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

⑥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.

⑦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,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·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.

제7조(실무조정회의)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.

제8조(민간자문위원회)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.

제9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)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

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.

제11조(개최도시선정위원회) ① 정상회의를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외교부,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선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경호안전통제단)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(이하 “통제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.

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3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1. 정상회의장 및 제반회의 시설 구성
2. 각국 정상 및 그 밖의 대표단이 사용할 숙소 조성 및 비품 설치
3.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수반되는 각종 부대행사장 조성
4.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(공항을 포함한다) 정비
5. 정상회의 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여건 정비

6.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준비위원회가 의결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사업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의 개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한 숙소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)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	100	200	300
나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	100	200	300